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57
----------	------

2022. 6. 21.(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6월 2일

나. 발 의 자 : 윤남진 의원 등 6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 6월 14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남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양봉산업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밀원식물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밀원식물을 확충하고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가. 제출배경

-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은 기후변화, 병해충 등으로 인해 꿀벌을 기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워 이에 따른 생산성·경제성 하락 등으로 양봉농가 감소, 생산기반 위축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음
-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6번째로 양봉농가 및 꿀벌 군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꿀벌실종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많은 양봉농가에 큰 타격이 있었음

- 농가 및 사육군수 : 2,705호 259천군(전국대비 10%) ⇒ 전국 6위 규모
- 규모별 : (50군미만) 1,168호 18천군, (50~99군) 513호 33천군, (100군이상) 1,024호 208천군
- 종 별 : 개량종 2,221호 248천군, 토종별 484호 11천군

- 또한, 양봉산업은 다른 축산업과 달리 단순히 양봉산물을 채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꿀벌이 화분매개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어 꿀벌을 보호·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양봉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검토내용

1)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관하여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는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음
-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밀원식물을 보호·육성·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 전문인력 양성, 제9조 연구 및 기술개발, 제10조 밀원식물의 조성, 제12조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1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9
경 기 도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3
강 원 도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
충 청 남 도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2020-03
전 라 북 도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2
전 라 남 도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6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9
경 상 남 도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6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양봉산업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밀원식물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법 제3조를 반영한 사항으로 보여짐
- **안 제4조**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우리도 실정에 맞는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내실있는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안 제5조**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법 제7조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양봉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안 제6조**는 밀원식물을 확충하고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 제10조의 밀원식물의 조성에 대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 및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인해 밀원식물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 양봉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양봉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등 양봉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밀원식물을 확충하고 사업비를 지원함은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 **안 제7조**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법 제12조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특히 양봉산업에 있어 큰 어려움은 밀원수 감소 및 꿀벌의 생육환경 악화, 병충해 등으로 꿀벌에 알맞은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꿀벌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기존의 법과 다르게 우리도의 특성에 맞게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다. 종합 검토의견

- 양봉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 신규 양봉농가 및 사육군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밀원수 감소 및 꿀벌의 생육환경 악화, 병충해 등으로 인해 양봉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양봉농가의 지속적인 경영난 등 산업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특히 꿀벌의 생육환경 악화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실종’ 현상을 야기시켰는데, 이에 따라 화분 매개체로써 그간 작물의 수정을 돕는 등 공익적 역할을 해온 꿀벌의 급감은 과수농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충북도 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된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의 육성 및 밀원식물의 확충, 그리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을 명시하였으며, 그 내용이 우리도 실정에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이행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도지사는 도유림을 조성하거나 도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꿀벌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제품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굴·지원하여 도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
- 밀원식물 조성사업의 지원 비용
-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비용

3. 관련 조문

- 안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 안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 안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다. 추 계 결 과 : 27,885백만원(국비 6,172, 도비 2,885, 시군비 9,143, 자담 9,685)

라.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 붙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양봉산업 육성 등 4개 사업	27,885	5,577	5,577	5,577	5,577	5,577

